물질안전보건자료
(Material Safety Data Sheet)

MSDS 번호: AA00250-0000000159

S-OIL SEVEN ECO ATF III

1.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
가. 제품명 : S-OIL SEVEN ECO ATF III
나. 화학식(분자량) 및 조성 : 탄화수소의 혼합물
다. 제품의 용도 및 사용상의 제한:
 1) 용도 : 자동차용 자동변속기유
 2) 사용제한 : 자료없음
라. 제조 및 공급회사 : 에쓰-오일토탈에너지스윤활유㈜ (전화번호 : 02) 6320-2000)
마.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7, HSBC빌딩 16층
바. 작성부서 : 기술개발팀
사. 담당부서 : HSEQ팀
아. 긴급연락번호 : 02) 6320-2000

2. 위험.유해성

가. 위험·유해성 분류 및 구분:

화학물질의 분류	유해. 위험성 구분
유해하지 않음	0

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treated heavy paraffinic (수소처리된 중질 파라핀 정제유(석유))	NFPA 지수 : 보건=1, 화재=1, 반응성=0
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treated light paraffinic (수소처리된 경질 파라핀 정제유(석유))	NFPA 지수 : 보건=1, 화재=1, 반응성=0
3-(decyloxy)tetrahydrothiophene 1,1-dioxide	자료없음.
Lubricating oils (petroleum), C15-30, hydrotreated neutral oil-based	자료없음.
Colorant for petroleum products (석유제품용 염료)	HMIS 등급 : 건강=1*, 인화성=1, 신체적 위해=0

나.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

구 분		표 시
그림문자		그림문자 없음
신호어		신호어 없음
유해·위험문구		- 물리,화학적 위험 : 위험물질로 분류되지 않음 - 건강 유해성 : 유해위험물질로 분류되지 않음 - 환경 유해성 : 환경적 유해위험물질로 분류되지 않음
예방조치 문구	예방	- 특별한 예방조치문구 없음
	대응	- 특별한 예방조치문구 없음
	저장	- 특별한 예방조치문구 없음

	폐기	- 특별한 예방조치문구 없음

다. 유해·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·위험성 : 자료없음.

3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가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화학물질명	이명	CAS 번호	함유량, %
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treated heavy paraffinic (수소처리된 중질 파라핀 정제유(석유))	없음	64742-54-7	35.0 ~ 45.0
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treated light paraffinic (수소처리된 경질 파라핀 정제유(석유))	없음	64742-55-8	45.0 ~ 55.0
3-(decyloxy)tetrahydrothiophene 1,1-dioxide	없음	18760-44-6	< 1.0
Lubricating oils (petroleum), C15-30, hydrotreated neutral oil-based	없음	72623-86-0	< 1.0
Colorant for petroleum products (석유제품용 염료)	없음	혼합물	0.01～0.05

나. 참조 사항

-본 제품에 사용된 광유계 기유는 IP346 법에 따라 측정되는 DMSO 추출물이 3% 미만입니다.

4. 응급조치 요령

가. 눈에 들어갔을 때 : 다량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씻고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.
나. 피부에 접촉했을 때 : 영향받은 부위를 비누 또는 순한 세제와 다량의 물로 씻을 것.
다. 흡입했을 때 : 신선한 곳으로 옮기고 보온에 힘쓴다.
호흡이 중지되었을 때는 즉시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의사의 처치를 받는다.
라. 먹었을 때 : 구토를 강요하지 말고, 증상에 따라서 부양적으로 치료하고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.
마. 급성 및 지연성의 가장 중요한 증상/영향 : 자료없음.
바. 응급조치 및 의사의 주의사항 : 특별한 해독제 없음. 증상에 따라 폐증치료.

5. 폭발·화재시 대처방법

가. 적절한 소화제 : 분말 소화약제, 이산화탄소, 포말, 물분무.
나. 사용해서는 안되는 소화제 : 옥내·외 소화전.
다. 소화방법 및 장비 :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제거하고 용기의 측면에 냉각수를 뿌릴 것.
라.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: 자료없음.
마.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:
화재 진압시 화학물질의 흡입 및 접촉을 피하기 위해 보호 장비(즉, 호흡기 장비, 화학보호의, 장갑, 신발, 고글, 마스크 등)를 착용하여야 한다.

6.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

가.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: 점화원의 제거, 충분한 환기, 호흡용 보호구
나.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: 폐기를 위해 용기에 보관할 것.
다. 정화 또는 제거방법 : 모래나 기타 흡수제를 사용하여 흡수시킨 후 폐기할 것.

7. 취급 및 저장방법

가. 안전취급 요령 : 흡연, 불, 불꽃의 사용을 금지할 것.
나. 안전한 저장 방법 : 밀봉할 것.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저장할 것.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저장할 것.
기타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할 것.

8.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

가. 노출기준 :

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treated heavy paraffinic (수소처리된 중질 파라핀 정제유(석유))	ACGIH STEL에 기초하여 10mg/㎥ 추천함. 국내 기준: 없음
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treated light paraffinic (수소처리된 경질 파라핀 정제유(석유))	ACGIH STEL에 기초하여 10mg/㎥ 추천함. 국내 기준: 없음
Mixed performance additive (복합성능첨가제)	Mineral oil : ACGIH TWA 5 mg/m³, OSHA TWA 5 mg/m³ 국내 기준: 없음
Colorant for petroleum products (석유제품용 염료)	자료없음. 국내 기준: 없음

나. 적절한 공학적 관리 : 실내에 환기가 충분히 되는 환경에서 사용되어야 하며, 필요 시에는 국소배기장치 및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.

다. 개인 보호구 :

1) 호흡기 보호 : 일반적인 사용 조건 하에서는 없음. 작업자들이 노출 한계 이상의 농도에서 일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방독면을 사용해야 합니다.
2) 눈보호 : 튈 염려가 있으면 다음을 착용하십시오: 옆 가리개가 있는 보안경.
3) 손보호 : 안전장갑.
4) 신체보호 : 보호의.

9. 물리화학적 특성

가. 외관 : 붉은색 액체.
나. 냄새 : 특징적임.
다. 냄새 역치 : 자료 없음.
라. pH : 자료 없음.
마. 녹는점 : 해당 없음.
바. 끓는점 : 자료 없음.
사. 인화점 : 220℃ (COC)
아. 증발 속도 : 자료 없음.
자. 인화성(고체, 기체) : 해당 없음.
차. 자연발화점 : 자료 없음.
카. 폭발한계 : 자료 없음.
타. 증기압 : 자료 없음.
파. 증기밀도 : 자료 없음.
하. 밀도 : 845kg/m³ at 15℃
거. 용해도 : 자료 없음.
너. n-옥탄올/물 분배계수 : 자료 없음.
더. 분해 온도 : 자료 없음.
러. 점도 : 32.2 cSt at 40℃
머. 분자량 : 자료 없음.

10. 안정성 및 반응성

가. 화학적 안정성 : 상온 및 상압에서 안정함.
나. 반응시 유해물질 발생가능성 : 상온 상압에서 반응 없음.
다. 피해야 할 조건 및 물질 : 열, 불꽃, 강산화제.
라.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: CO, CO2, 탄소산화물.

11. 독성에 관한 정보

가.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

1) 급성흡입 독성 : 자료없음.
2) 급성경구 독성 : 자료없음.
3) 피부접촉 : 자료없음.
4) 눈접촉 : 자료없음.

나. 물리적, 화학적 및 독성학적 특성에 관련된 증상 : 자료 없음.
다. 단기 및 장기 노출에 의한 지연, 급성 영향 및 만성영향

1) 급성 독성 물질 :

화학성분명	경구	경피	흡입
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treated heavy paraffinic (수소처리된 중질 파라핀 정제유(석유))	LD50 > 5000mg/kg (rat – OECD 420)	LD50 > 5000mg/kg (rabbit – OECD 402)	LC50 > 5 mg/l (4h, aerosol, rat – OECD 403)
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treated light paraffinic (수소처리된 경질 파라핀 정제유(석유))	LD50 > 5000mg/kg (rat – OECD 420)	LD50 > 5000mg/kg (rabbit – OECD 402)	LC50 > 5 mg/l (4h, aerosol, rat – OECD 403)
Colorant for petroleum product (석유제품용 염료)	LD50 > 5000 mg/kg (rat, 추정치)	LD50 > 5000 mg/kg (rabbit, 추정치)	-

2)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: 해당없음.
3)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: 해당없음.
4) 호흡기 과민성 물질 : 해당없음.
5) 피부 과민성 물질 : 해당없음.
6) 발암성 물질 : 해당없음.
7)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: 해당없음.
8) 생식독성 물질 : 해당없음.
9) 표적장기·전신독성 물질(1회 노출) : 해당없음.
10) 표적장기·전신독성 물질(반복 노출) : 해당없음.
11) 흡인 유해성 물질 : 해당없음.

라. 독성의 수치적 척도(급성 독성 추정치 등) : 자료 없음.

12. 환경에 미치는 영향

가. 생태독성 :

1) 급성영향

화학물질명	조류	갑각류	어류
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treated light paraffinic (수소처리된 경질 파라핀 정제유 (석유))	EL50 > 100 mg/l (72시간, Pseudokirchnerella subcapitata - OECD 201)	EL50 > 10000mg/l (48시간, Daphnia magna - OECD 202)	LL50 > 100mg/l (96시간, Oncorhynchus mykiss - OECD 203)
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treated heavy paraffinic (수소처리된 중질 파라핀 정제유 (석유))	EL50 > 100mg/l (48시간, Pseudokirchnerella subcapitata - OECD 201)	EL50 > 10000mg/l (48시간, Daphnia magna - OECD 202)	LL50 > 100mg/l (96시간, Oncorhynchus mykiss - OECD 203)

2) 만성영향

화학물질명	조류	갑각류	어류
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treated light paraffinic (수소처리된 경질 파라핀 정제유 (석유))	-	NOEL 10mg/l (21일, Daphnia magna - QSAR Petrotox)	NOEL > 1000mg/l (14/21일, Oncorhynchus mykiss - QSAR petrotox)
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treated heavy paraffinic (수소처리된 중질 파라핀 정제유 (석유))	-	NOEL 10mg/l (21일, Daphnia magna - QSAR Petrotox)	NOEL > 1000mg/l (14/21일, Oncorhynchus mykiss - QSAR petrotox)

나. 잔류성 및 분해성 : 해당없음.

다. 생물 농축성 :

1) 생물 농축성 : 자료 없음.

2) 생 분해성

화학물질명	생분해성

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treated light paraffinic (수소처리된 경질 파라핀 정제유 (석유))	6% (28일, 호기성, 가정 하수, 쉽게 분해되지 않음)
Distillates (petroleum), hydrotreated heavy paraffinic (수소처리된 중질 파라핀 정제유 (석유))	6% (28일, 호기성, 가정 하수, 쉽게 분해되지 않음)

라. 토양이동성 : 해당없음.
마. 기타 유해 영향 : 자료 없음.

13. 폐기시 주의사항

가. 폐기방법 : 폐기물 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.
나. 폐기시 주의사항 : 폐기물 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명시된 주의사항을 고려하시오.

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

가. 유엔 번호 : 해당없음.
나. 유엔 적정 선적명 : 해당없음.
다.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: 해당없음.
라. 용기등급 : 해당없음.
마. 해양오염물질 : 해당없음.
바.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: 자료없음.

15. 법적 규제현황
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: 해당없음.
나. 화학물질관리법 등 타 부처의 화학물질관리 관련법에 의한 규제 : 해당없음.
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: 제4류 제4석유류.
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: 지정폐기물 (폐유, 06-01-01).
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: 자료없음.

16. 기타 참고사항

가. 자료의 출처 : 화학물질관리법 기존화학물질목록, 원자재 MSDS 등
나. 최초 작성일자 : 2019.09.17
다.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: 3, 2024.02.19

책임의 한계

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제공된 정보는 발표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지식과 정보 그리고 믿음에 기초할 때 정확합니다. 제공된 정보는 오직 안전한 취급, 사용, 처리, 보관, 운송, 폐기 및 배출을 위한 지침이며, 보증서나 품질 사양서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. 이 정보는 오직 지정된 특정 물질에만 관련이 있으며, 이 문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한, 기타 물질과 혼합해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물질안전보건자료의 끝